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[별지 제32호의7서식] <신설 2025. 1. 24.>

승인번호 제 호	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		
사업장명		사업자등록번호	
대표자			
사업장 소재지		전화번호	

「물환경보전법」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발급합니다.

년 월 일

시행자 직인